

# 전공 트랙과정 운영에 관한 지침

시행일 : 2023.04.17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전공 트랙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① 전공 트랙과정(이하 트랙과정)이라 함은 개설 학부(과)의 교육과정 안에 마련된 특화된 전공교육체계로, 본인의 학업 목표에 따라 교육과정을 이수토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.

② 트랙과정은 세부적으로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.

1. 영어강의전용트랙 : 영어강의만으로 전공과정 이수가 가능한 교육과정
2. 산학협력맞춤형트랙 : 특정 기업 및 기업군과 협약을 맺어 해당 산업의 전문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일부 교과목을 기업의 요구에 맞게 재편성하여 운영하는 교육과정
3. 융합트랙 : 새로운 학문 분야에 대한 사회적 수요 및 필요성에 따라 학부(과) 간 협력에 의해 운영하는 교육과정
4. 전문심화트랙 : 전공 내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구성한 교육과정
5. 체험적·문제해결형트랙 : 기존의 지식 전달형 교육에서 체험적·문제해결형 교육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교육계의 흐름을 반영하여 개설된 교육과정
6. 지식·창업트랙 : 학생이 스스로 진로를 설계하고 창업과 진로를 열어갈 수 있도록 사회적 문제의 인식과 창의적 문제해결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구성한 교육과정

제3조(트랙과정 설치 신청 및 승인) ① 트랙과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전공은 교육과정 정기개편 또는 부분개편 시 트랙 교육과정 편성 자료를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트랙과정 승인은 교육과정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.

제4조(신청자격) ① 트랙과정이 설치된 전공을 단일전공 또는 다전공의 형태로 이수하면서, 2학기 이상(편입생은 1학기 이상) 등록하고 신청 당시 재학 중인 자에게 신청자격을 부여한다.

② 수업연한을 초과한 자는 신청할 수 없다. 단, 신청 학기에 트랙 과정을 모두 이수하여 졸업이 가능한 자가 학(부)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신청을 허가한다.

③ 세부 신청자격은 트랙과정을 운영하는 전공에 따라 다를 수 있다.

④ 한 전공당 트랙은 최대 2개까지 신청 가능하다.

제5조(트랙과정 이수방법) ① 트랙과정 이수를 희망하는 자는 소정의 기간에 트랙과정 이수를 신청한 후 해당 학부(과)장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.

② 트랙과정 이수가 승인된 자는 해당 전공 교육과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트랙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.

제6조(트랙과정 승인정원) ① 트랙과정 승인 정원을 제한하지 않는다.

② 단, 전공 특성에 따라 정원을 제한할 수 있으며, 다전공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다.

제7조(트랙과정 이수 포기) 트랙과정 이수를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기간에 포기 신청을 하여야 한다.

제8조(트랙과정 표기) 트랙과정은 다전공과정으로 인정하지 않으며, 소정의 트랙과정을 이수 한 자에게는 졸업증명서 전공명 하단에 이수 트랙전공명을 표기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2023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.